

종 법(宗法)

법복법

제26조 이법에서 법복이라 함은 송니 또는 포교사가 법회봉행 의식집전 등 법요를 행할 때 착용하는 의복을 말한다.

제27조 본법의 법복은 제1종 법복과 제2종 법복(법사복)으로 구분한다.

제28조 제1종 법복은 재래의 가사 장삼으로 한다.

제29조 가사의 규격과 색도 착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계	대종사 종사	종덕 대덕	중덕 대선	사 미
색 도	가사	가사	가사	가사
일월광	금 색	청 색	녹 색	백 색
조 수	21-25	21조 이하	17조 이하	13조 이하

제30조 제1종법복은 사미계를 수지한 삭발승려에 한하여 각급 법계별로 착용한다.

제31조 제2종 법복은 품위있고 현실에 맞도록 법사복을 착용한다.

제32조 제2종 법복에는 낙자를 착용할 수 있다.

제33조 종단의 합동법회 및 수련교육에는 일제히 법사복을 착용한다.

제34조 본종의 관모는 비로관과 승모로 한다.

- 비로관은 종사 이상의 법계 수지자가 법회집전시에 착모한다.
- 승모는 일반 승려가 승복에 착용한다.

제35조 본종의 법복은 법회 법요의식 설계 의식 집전때가 아니면 착용하지 않는다.

제36조 법복은 고래의 관례에 의하여 경건히 예를 갖추어 수해야 하며 소중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